

유엔사해체운동의 첫 승리 - 유엔기법 개정

사진가 이시우

유엔기법법이 바뀌었다.

유엔현장은 물론이고 기존 유엔법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번 유엔기법법의 개정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이 유엔법의 약한고리인 유엔기법법을 집중공략해왔다는 점에서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가짜'유엔사'해체국제캠페인'은 운동의 첫 단계로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여왔고 국제민변을 통해 2020년 9월 구테레스 사무총장에게 '유엔사'의 유엔기사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1주일만에 당도한 유엔사무국의 회신은 오직 '사무총장과 무관한 사항'이란 것이었다.

그런데 회신이후인 2020년 11월 유엔기법법이 대폭 수정되어 유엔관보에 고시된 사실을 뉴욕의 존 김 변호사님이 최근 발견하여 한국에 알려왔다.

49년 처음 유엔기법이 제정된 뒤, 67년을 마지막으로 개정된 이래 약50년 만에 개정되었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67년 개정안의 폐기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유엔법의 변화를 가져온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6. ‘유엔기법과 규정’(ST/SGB/132)이란 제목의 1967년 1월 1일자 사무총장고시는 이로써 폐지된다.”

67년 유엔기법법 전문은 52년 기법법규정을 유지(remain)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새 기법법에서 67년 기법법 폐지를 명시함으로써 50여년 동안 적용되어온 낡은 기법법의 청산을 선언한 셈이다.

다음은 새 유엔기법법 중에서 '유엔사'해체운동 관련 유의미한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사용조항 삭제

67년 '유엔기법과 규정'까지 유지되어온 6조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사용. 기발은 유엔의 해당 기구에 의해 효과적으로 권한이 명시된 군사작전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이다'가 삭제되었다.

이 조항은 1950년 7월7일 안보리결의84호에서 미국통합사령부에 유엔기사용을 승인하는 항목이 통과되고 난 뒤 갑작스럽게 추가되었다. 당시 기법법에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사용조항 자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트리그브 리 사무총장이 결의84호를 합리화하기 위해 50년 7월 28일 서둘러 이 조항을 추가삽입하여 개정한 것이다. 유엔현장의 가장 탁월한 이론가로 평가되는 한스 켈젠은 이 조항을 찍어 안보리의 미국통합사령부창설결의(안보리결의84호)에 대한 사후합리화라고 맹비판하였다. 그래서인지 67년 '유엔기법과 규정'에서나 2020년 '유엔기법'에서나 모두 50년 7월 28일 이 항목의 개정사실은 애써 언급하지 않았다.

“2. ...기법법은 사무총장에 의해 1947년 12월 19일 처음 발표되었으며, 1949년 7월 23일 기

발규정은 통합되었다.

3. 법과 규정은 1952년 11월 11일에 수정되었다. 규정은 1967년 1월 1일에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법 및 규정은 사무총장 고시 ST/SGB/132로 공표되었다.”

위와 같이 새깃발법 서문 2항과 3항사이에 50년 7월28일 개정사실의 언급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총장과 사무국으로서도 가장 명분이 약한 조항이었을 것이다. ‘까짜’유엔사’해체 국제캠페인’은 작년에 총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켈젠을 인용하여 이를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이번에 완전히 삭제 폐기되었다.

미국은 현 정전상태를 군사작전의 지속으로 보아왔고 이를 통해 유엔기사용을 합리화해 왔다. 이제 그런 논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는 유엔이 향후 유엔기를 군사작전, 즉 전쟁에 특정하여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된다. 유엔은 창설 이후 한번도 헌장7장42조의 군사강제조치를 결정한바 없으며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안보리에서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군사강제조치가 채택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군사작전이란 표현도 문제였다. 전쟁을 부정하는 부전조약의 토대에서 창설된 유엔헌장은 전쟁이란 단어를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헌장의 하위법인 유엔기법에서 전쟁의 의미를 갖는 군사작전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유엔이 군사적 강제조치를 결정하면 반드시 깃발사용이 뒤 따를텐데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사용조항이 삭제됨으로서 유엔기사용은 물론 군사작전자체를 포기한 것 아닌가하는 추론까지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 깃발법에서 군사관련 조항을 역지로 찾아본다면 유일하게 선박에서의 유엔기계양을 다룬 4조 5항 (c)목이다.

“4-5-(c). 군대-또는 경찰-를 파견하는 국가의 국기 또는 유엔공식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에 탑승한 국민의 국기와 같은 다른 깃발들은 계양되어선 안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만약 유엔이 헌장7장 강제조치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 그리하여 그 전쟁이 유엔의 공식업무가 되는 경우에만 그 선박에 유엔기를 계양할 수 있으나, 그 선박에 한국전 참전국처럼 참전국깃발은 사용이 불가하다. 유엔기와 항행에 필수적인 깃발만 계양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유엔사령부’처럼 유엔공식업무에 종사하는 유엔조직이 아닌 단체가 자신들의 선박에 유엔기를 달 수 없다는 의미가 된다.

2. 유엔전문기관에 의한 유엔기사용조항삭제

67년 깃발법 4조2항은 ‘유엔과 유엔전문기관에 의한 유엔기의 사용’이란 제목이었으나 새깃발법 제3조의 제목은 ‘유엔에 의한 유엔기의 사용’으로 ‘유엔전문기관’이 삭제되었다. ‘유엔전문기관에 의한 유엔기사용’을 다룬 아래 내용도 당연히 삭제되었다

“유엔기는 유엔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그러나 이 깃발법에 포괄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유엔에 의해 설립된 모든 위원회, 위원단, 기타 법인으로서 유엔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단위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67년 유엔깃발법 4조2항)

위 67년 깃발법이 언급한 ‘위원회, 위원단, 기타 법인등 유엔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모든 단위’

와 관련 '유엔사'는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간혹 '안보리에 의해 설립된 미국통합사령부를 대신하여'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유엔사'가 마치 유엔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부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코피아난, 반기문 사무총장이 거듭 확인했듯 '유엔사'는 유엔기구가 아니다. '유엔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유엔전문기관의 유엔기 사용조항삭제로 '유엔사'가 유엔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억지주장은 불식되게 되었다. 따라서 소위 '유엔사'에 의한 유엔기사용은 유엔에 의한 유엔기사용이 아니다.

3. 유엔기계양장소의 제한

새 깃발법 3조는 유엔기계양장소를 엄격히 한정했다.

“3-1-(a) 유엔이 점유한 모든 건물, 사무실 및 기타 부지와 자산; 그리고
3-1-(b) 관저로 지정된 모든 공관.”

이는 67년 법에도 있던 내용이지만 '유엔전문기관에 의한 유엔기사용'조항이 삭제되면서 유엔 소유의 건물로 특정되었다. 따라서 '유엔사령부'가 있는 평택기지, 일본유엔사후방기지, 비무장지대초소, 부산유엔군묘지, 전국70여개소의 참전비등은 이들 장소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사라졌다. 따라서 깃발을 내려야 한다.

자료사진1 평택유엔사령부 유엔깃발, (연합뉴스2018.6.29.)

자료사진2 일본유엔사후방기지 중 오키나와 캠프화이트비치 유엔깃발(이시우)

자료사진3 비무장지대초소 유엔깃발, (이시우)

자료사진4 부산유엔군묘지 유엔깃발, (뉴시스2020.11.11)

자료사진5 설마리영국군참전비 유엔깃발 (blog.daum.net.iskra2013)

즉 '유엔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유엔전문기관의 혼돈이 제거됨과 함께 '유엔사'와 관련되어 이들 장소에 게양된 유엔기는 불법이 된다. 유엔사규정551-4의 비무장지대 초소에의 유엔기계양 조항도 새 유엔깃발법하에서는 불법이 된다.¹⁾ 새 법에는 유엔기계양장소로 선박과 차량이 추가되었다.

“4-4-(b) 유엔깃발 이외의 깃발은 유엔차량에 게양되어서는 안 된다”

4-4-(b)는 유엔차량엔 유엔깃발만 단다는 의미이고 이는 다시 유엔차량이 아니면 유엔깃발을 달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서 '유엔사령관'의 관용차량에는 유엔기를 게양할 수 없게 되었다. '유엔사령관'차량은 유엔의 공식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박조항도 새법에 추가되었다.

“4-5-(a) 유엔기는 유엔공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배인 경우에만, 그리고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면허를 가진 배에 기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가 게양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선박에

1) UNC Reg 551-4 「한국 정전협정 준수」(2019.5.13.), p.10

계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에 '유엔사' 소속으로 기항하는 선박들도 유엔기를 달 수 없다. 또 한강하구에 중국선박의 불법어로를 단속한다고 출동했던 '유엔사' 선박들이 유엔기를 다는 것도 불법이 된다. '유엔사' 활동은 유엔의 공식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소한 사항도 위반이 된다.

“4-5-(d) 영해국가의 국기계양이 요구되는 경우 유엔기는 전면마스트상단에 계양되어야 한다.”

위에 언급한 한강하구감시선박은 유엔기를 선미에 달았다.

자료사진6 한강하구감시선박(뉴시스)

그러나 새 법에 따르면 선수에 달아야 했다. 한편 유엔회의장에 유엔기를 계양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3-3. 깃발은 모든 유엔회의 또는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4-2. 유엔관리들과 한 국가대표간, 다른 국제기구간 양자회담에서의 유엔기 계양”

그렇다면 판문점 군사정전위회의장에 유엔기를 설치할 수 없다. 군정위회의장은 유엔회의장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회의장 탁자 가운데에 탁자용유엔기가 계양되어 있다. 앞으로 이는 불법이 된다.

자료사진7 판문점 군정위탁자 유엔깃발 (출처미상)

계양장소문제를 확대하면 조기계양에 대한 조항에서도 '유엔사'에 적용될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7-2. 깃발은 사무총장의 승인에 따라 다음 상황에서 조기를 계양한다.

(a)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원수의 사망 시 깃발은 유엔본부와 본부에서 떨어진 사무소에, 그리고 회원국에 위치한 '유엔사' 무소에 죽음을 알게 된 즉시 하루 동안 조기를 계양한다.”

위 조항은 추모와 애도와 관련하여 유엔기를 계양할 수 있는 공간을 특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산의 유엔묘지등은 이런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유엔군묘지는 과거엔 유엔관리하에 있었지만 지금은 유엔관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깃발로 관을 덮는 것도 불법이 된다.

“7-8. 깃발을 사용하여 관을 덮을 때 무덤에 내리거나 땅에 닿도록 해서는 안된다.”

지난 2018년 8월 트럼프와의 약속으로 미군유해가 송환되었고 2020년에도 송환이 있었다. 이

때 유엔기로 관을 덮은 사진이 공개되었다.

자료사진8 미군유해송환 관을 덮은 유엔기(통일뉴스2007.04.12)

새법에 따르면 유엔이 애도를 표하는 대상, 즉 '유엔깃발을 사용하여 관을 덮'는 대상은 회원국국가원수나 전 사무총장, 전 총회의장등이다. 한국전 참전군인들은 아니다. 따라서 미군유해송환시 유엔기로 관을 덮은 것에 과거일로서는 가하나 이법이 발효된 뒤에는 불법이 된다.

4. 유엔기계양시간의 제한

유엔기계양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6-2-(c) 기간은 제한되며 일시성이 기본이다.”

'유엔사'는 70년동안 깃발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위 조항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따라서는 '유엔사'가 여전히 오인하여 부당한 주장을 전개할 법한 추가조항이 있다.

“6-3-(a) 현 고시의 발행이전에 깃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승인된 조직 및 개인들은 위의 2(c)항에 따라 명시된 제한사항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는 유엔이외의 일반적 유엔기사용은 일시적으로만 가능토록 제한한 6-2-(c)의 면제조항이다. 위 6-3-(a)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유엔사'는 1950년 7월 7일 유엔기사용이 '이미 승인된 조직'이 될 수 있다. 아마도 '유엔사'는 자신들이 유엔기 사용에 대해 '이미 승인된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그럼 유엔기를 더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정법의 기안자는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1950년 7월 7일 안보리결의 84호의 유엔기사용승인은 유엔기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불법이다. 당시 유엔기법에 의하면 안보리는 유엔기사용승인권한이 없었다. 오직 사무총장만이 유엔기사용승인권이 있었다. 이에따라 1994년 12월 24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판문점기자회견에서 유엔기사용승인권자인 자신은 '유엔사'의 유엔기사용을 승인한 적 없다고 당당히 공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서 '유엔사'는 유엔기사용이 '이미 승인된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만약 '유엔사'가 유엔기를 계속 계양하려면 '유엔사'의 업무가 유엔공식업무이며, '유엔사'가 유엔조직임을 증명해야하고 그것을 통해 유엔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그런 후에도 유엔기는 일시적으로만 계양할 수 있다. 하지만 유엔은 유엔사가 유엔조직이 아님을 명백히 했으므로 '유엔사'의 노력이 성공할 가능성은 0이다.

5. 유엔이외의 깃발사용에서의 제한

'유엔이외의 단체나 개인도 유엔을 지지한다면 유엔기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67년법에도 있었으나 새법에서는 새로운 제한사항을 추가했다.

“6-2-(a) 깃발을 계양하는 것이 유엔과 그 기를 계양하는 단체나 개인이 어떤 협력관계가 있

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된다”

'유엔사'가 유엔을 지지하는 표시로 유엔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깃발계양은 가능하나 그것이 '유엔사'와 유엔의 협력제휴관계를 암시해선 안된다. '유엔사'는 유엔과의 관련성을 적극강조하고 있으며 그중 중요근거가 유엔기사용이다. 이는 '유엔사'에 맞춤형으로 제약을 가하는 듯한 추가조항이 아닐 수 없다.

6. 유엔기변형금지

유엔기는 변형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선 안된다.

“8-2. 깃발 또는 그 복제물은 유엔에 의해 또는 유엔을 대신하여 출판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문구류, 책, 잡지, 정기 간행물 또는 기타 성격의 출판물에 도장찍기나, 인쇄나, 새기거나 달리 부착할 수 없다.

8-4. 어떠한 성질의 표장, 휘장, 문자, 단어, 도형, 디자인, 사진 또는 그림에 결코 깃발을 배치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이들 조항은 67년 깃발법에서부터 이어져온 조항이다. 8-2항은 '유엔사'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매년 발간되는 '전략다이제스트' 같은 정기간행물에 사용된 유엔기사용의 불법성을 잘 드러내주는 조항이다.

8-4항은 '유엔사'휘장에 가한 유엔기의 변형이 불법을 구성함을 잘 드러내주는 조항이다.

자료사진9 유엔사 로고(유엔사홈페이지)

사진에서 보듯 현재 유엔사홈페이지에 부착된 로고나 군인들의 복장에 부착된 휘장은 유엔상징 주위의 원형테두리에 16개의 별과 '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문자가 박혀있다. 이같은 유엔기의 변형은 새깃발법 이전부터 불법이다. 또한 관을 유엔기로 포장하는 것도 금지된다.

“8-6. 7조 8항을 침해하지 않고 깃발은 어떤 종류의 주름잡힌 포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8-6항은 새 깃발법에 추가된 조항인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7조8항은 관에 유엔기를 덮는 것을 다룬 조항이다. 2018년 미군유해송환시 수송기에 실린 유해는 관에서 박스로 옮겨졌고, 박스는 유엔기를 감싸 포장하였다. 이런 포장은 앞으로는 불법이 된다.

자료사진10 유해상자를 포장한 유엔기(VOA2018.7.28)

7. 위임의 명시

67년 깃발법에서는 사무총장이 유엔기사용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 이를 통해 1950년 7월 7일 안보리결의84호에서 유엔기사용을 승인한 안보리에게 총장이 마치 위임한

것 같은 사후합리화효과를 노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새 법에서는 피위임자를 정확히 명시하여 이런 오해를 불식시켰다.

“9-1-(a) 비서실장, 유엔기의 사용과 유엔본부에서의 조기계약 승인권; 그리고 9-1-(b) 위(a)항에 따라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소의 장, 다른 유엔사무소의 장, 특별 대표, 공관장 및 상주조정관은 조정된 방식으로 제7조에 따라 그들의 사무실과 공관에서의 조기 계약 승인권.”

이로서 깃발계약권한이 사무총장과 그가 위에 위임한자에게만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안보리나 총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6조 3항 (b)목은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6-3-(b) 특별한 상황에서 유엔은 어떤 조직과 개인들이 영구적으로 깃발을 계약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새 깃발법에서 승인이란 단어는 모두 주어를 사무총장으로 하고 있다. 다음 조항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라는 단서를 달고도 주어는 사무총장이다.

“7-2-(e) 깃발은 위(a)에서 (d)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특별한 상황에서 사무총장의 승인에 따라 조기로 계약된다.”

그런데 위 조항만은 주어가 유엔이다. 승인이란 단어와 연결된 주어에서 사무총장이 아닌 유엔으로 명시된 것은 6-3-(b)조항이 유일하다. 이 조항의 유엔이 곧 유엔사무총장을 의미한다면 아무문제가 없으나 안보리나 총회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면 한국전쟁 때와 같이 안보리가 유엔기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게 된다. 그렇다면 애써 67년 깃발법 6조 ‘군사작전에서의 유엔 기사용’조항을 폐기한 의미가 없어진다. ‘특별한 상황’을 군사작전으로 보면 결국 67년 깃발법 6조가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가지 이유에 의해 위 조항의 ‘유엔’은 ‘유엔사무총장’이라고 해석함이 합당하다 하겠다.

첫째, 사무총장은 유엔주요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자이지 위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1947년 총회결의167(II)에 의해 유엔기사용승인권은 사무총장에게 위임되었고 깃발법을 제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다. 사무총장은 이 위임의 범위를 넘어, 즉 자기에게 수여된 권한과 책임을 넘어 입법할 수 없다. 만일 6-3-(b)조항의 승인주체가 유엔안보리와 유엔총회가 된다면 사무총장이 안보리와 총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장98조에 의해 사무총장은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 등…기관에 의하여 그에게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유엔주요기관으로부터 위임받는 지위이지 이들 기관에 위임하는 지위가 아니다.

둘째, 규범통제제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규범통제란 규범 간에 충돌이 생길 때 이를 조절 통제하는 제도이다. 켈젠의 법단계이론을 수용하여 확립된 제도이다. 즉 법규범간의 상하지위와 우선순위를 정하여 통제한다.²⁾ 전자에 의해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의 지위서열이, 후자

에 의해 신법과 특별법우선원칙이 정해진다. 유엔 역시 유엔헌장-유엔법-유엔규정의 지위가 정립되어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헌장에 의해 설립된 기관인 총회결정에 의해 위임된 사무총장권한인 유엔기법이 헌장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 마치 명령이 법률을 통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더구나 6-3-(b)조항은 유엔기의 사용전체가 아니라 유엔기계약기간에 대한 사소한 규정일 뿐이다. 유엔기사용전체에 대해 새 깃발법9조에서 사무총장이 세세한 권한위임을 한 상태에서 그 일부조항에 대한 권한을 사무총장의 상위기관에 위임하는 것 역시 규범통제의 원리에 맞지 않다.

따라서 6-3-(b)조항의 ‘특별한 상황하에서의 유엔’의 깃발영구계약 승인권은 곧 ‘유엔사무총장’의 승인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8. 책임의 명시

마지막으로 새 깃발법은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유엔관리들에게 깃발법 준수의 책임을 명시했다.

“9-3. 유엔비서실장, 특별대표, 공관장 및 상주 조정관을 포함한 유엔관리들은 현 깃발법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유엔사의 유엔기에 대한 부정한 사용에 대해 사무총장과 위에 열거된 피위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깃발법준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한국 헌법6조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조약이 체결·비준에 이르는 국내법으로의 변형과정을 거치는데 비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이러한 변형 과정없이 직접 수용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제관습법을 의미한다.³⁾ 유엔기법의 형식은 70년 넘게 유지되어오고 있으며 이를 특별히 불승인한 회원국이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하면 국제관습법으로 정착되었다고 판단할만하다. 또한 특별히 국내이행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집행성⁴⁾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으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⁵⁾ 유엔회원국인 한국이 유엔기법을 수락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을 발효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유엔사’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엔회원국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다하는 일이기에 ‘유엔사’나 미국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국내법적 근거까지 갖춘 상태에서 유엔사의 유엔기사용금지운동은 더욱

2) 장영철, 오스트리아 憲法裁判制度와 示唆點, 公法學研究 Vol.10 No.1, (한국비교공법학회 2009), p. 231참조.

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관습국제법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관습국제법 외에 ‘포로에 관한 제네바협정’, ‘제노사이드방지 협약’ 등 일반적으로 규범성이 인정되는 조약도 포함된다는 견해등으로 나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제법학자는 전자의 견해를, 헌법학자는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고 한다(정인섭, 신국제법 강의:이론과 사례, (박영사, 2019), pp.135-136면).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관습국제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포함된다.

4) 장지원, 국제법과 국내법 간의 관계에 대한 한국 및 해외 헌법의 비교법적 연구, 서강법률논총 9(1), (2020.2), p.119

5) 남북현, “헌법 제6조 제1항의 구체적 의미”, 한양법학 제23집, (한양법학회, 2008.6), p.201

힘 있게 전개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법적 효력이 발효되기 전이라도 유엔관리들에게 유엔기법준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 없다.

(첨부자료) 2020년 유엔기법 한글번역문 - 이시우 번역

유엔사무총장고시

유엔기법

번역 이시우

사무총장은 유엔기의 의전 및 사용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 총회는 결의167(II)에 의해, 결의 92(I)에서 채택된 공식상징을 연청바탕색 중앙에 배치한 유엔기를 결정하였다. 같은 결의로 총회는 사무총장에게 깃발의 치수 및 비율에 관한 규정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사무총장이 깃발의 규제된 사용의 바람직함과 깃발의 존엄성의 보호할 깃발법 채택권한을 부여했다.
2. 그 결의에 따라, 깃발법은 사무총장에 의해 1947년 12월 19일 처음 발표되었으며, 1949년 7월 23일 깃발규정은 통합되었다.
3. 법과 규정은 1952년 11월 11일에 수정되었다. 규정은 1967년 1월 1일에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법 및 규정은 사무총장 고시 ST/SGB/132로 공표되었다.
4. 개정된 깃발법은, 기존의 분리된 깃발법과 깃발규정을, 깃발사용을 규정한 단일문서로 통합하고, 이 고시에 첨부되었다.
5.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발효한다.
6. “유엔기법과 규정”(ST/SGB/132)이란 제목의 1967년 1월 1일자 사무총장고시는 이로써 폐지된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 (서명)

유엔기법

제1조

깃발의 도안, 치수 및 사양

1. 유엔기는 연청색 배경에 흰색(색상 코드: Pantone Matching System 2925)으로 유엔의 공식상징을 표시한다. 유엔상징은 모든 경우에 깃발너비의 1/2이어야 하며 정중앙에 위치한다.
2. 깃발은 항상 앞면과 뒷면이 동일해야 한다.
3. 깃발의 비율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2:3, 이에 따라 깃발너비는 깃발길이에 대해 2대 3; 또는
 - (b) 3:5, 이에 따라 깃발너비는 깃발길이에 대해 3대 5; 또는
 - (c) 유엔상징이 원래비율로 표시되는 조건이라면 유엔기는 어떤 나라의 국기와 동일한 비율

로 게양된다.

4. 깃발이 옥외용인지 실내용인지에 따라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위의 3항의 규정이 유지된다면 다음 표준크기중 하나로 할 수 있다: 옥외게양용 4피트 x 6피트(122cm x 183cm) 및 실내게양용 3피트 x 5피트(91cm x 152cm). 탁자깃발은 4인치 x 6인치(10cm x 15cm)정도로 할 수 있고, 차량깃발은 20cm x 30cm(8인치 x 12인치)정도로 할 수 있다.
5. 깃발은 나일론 또는 기타 품질의 비흡수성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제2조

깃발의 위엄

유엔기는 존중받아야 하며 어떤 모욕에도 지배되어선 안된다. 게양방식과 상황은 게양하는 나라의 국기게양에 적용되는 법률 및 관습에 적합한 한에서만 고려해야한다.

깃발이 더 이상 수여된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마모나 찢김으로부터 닳았을 때, 게양되어선 안되며, 어떤 오용이나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품위있게 폐기되어야 한다.

제3조

유엔에 의한 유엔기의 사용

1. 유엔기는 다음과 같이 게양된다:
 - (a) 유엔이 점유한 모든 건물, 사무실 및 기타 부지와 자산; 그리고
 - (b) 관저로 지정된 모든 공간.
2. 깃발은 유엔의 공식업무에 사용되는 선박 및 차량에도 게양될 수 있다. 사무총장의 공식방문 또는 국민방문 중 카퍼레이드의 일부로서 차량이 운행될 때 보안 및 안전고려사항을 조건으로 사무총장이 여행하는 차량에 깃발을 게양할 수 있다.
3. 깃발은 모든 유엔회의 또는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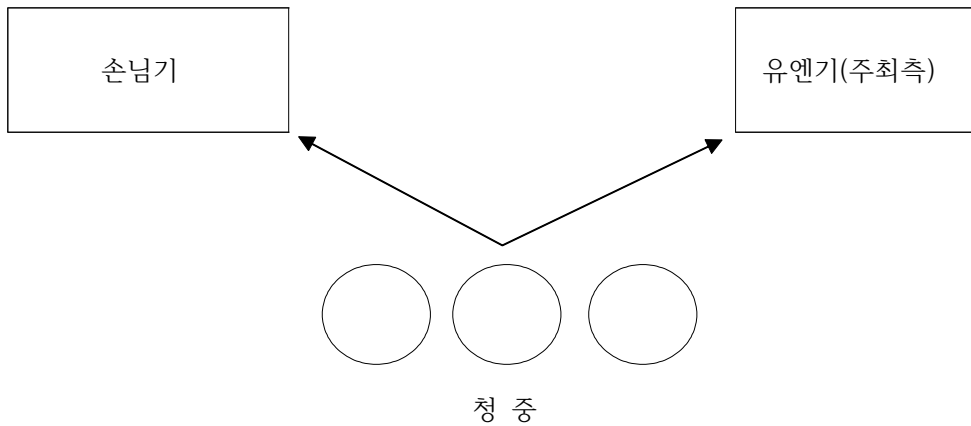
제4조

깃발 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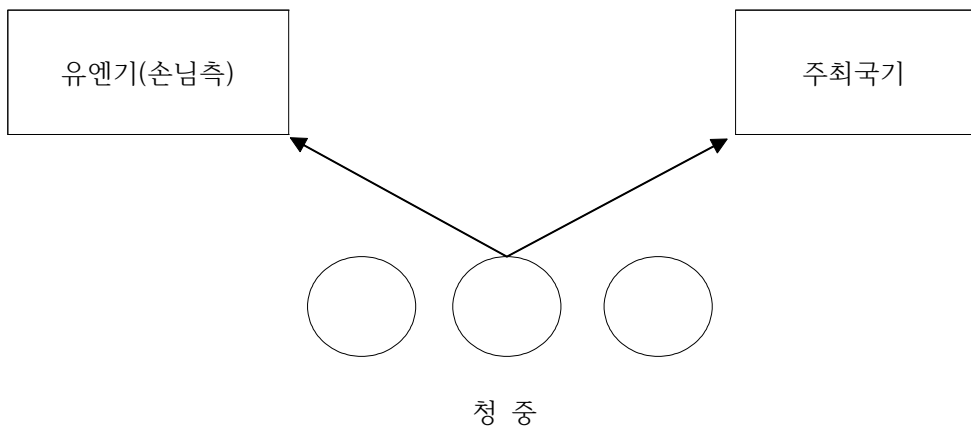
1. 게양을 위한 시간과 특정경우
 - (a) 유엔깃발은 일반적으로 건물에만 그리고 일출부터 일몰까지 고정 깃대에 게양되어야 한다. 깃발은 특별한 경우, 밤에 그리고 적절한 조명이 있다면 어둠이 내린 시간동안에도 게양할 수 있다;
 - (b) 전천후 깃발이 아닌 한 날씨가 굵은 날에는 깃발을 게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 (c) 야외에서 개최되는 유엔회의와 관련하여 유엔본부와 사무소들이 설치되었을 때, 유엔에 주최국이 구역전체의 책임이양을 지시하고 유엔회의 개최를 위해 유엔이 사용하도록 주최국 정부가 제공한 구역내에 깃발을 게양하여야 하며, 구역전체에 대한 책임이 주최국에 회복될 때까지 깃발게양을 유지해야한다.
2. 유엔관리들과 한 국가대표간, 다른 국제기구간 양자회담에서의 유엔기 게양
 - (a) 유엔기가 한 국가 또는 다른 국제기구의 깃발과 함께 게양되는 경우, 모든 깃발은 같은 높이로 게양되어야하며 크기는 거의 같아야 한다; 그리고

(b) 깃발의 명예로운 위치는 주최자가 관람자나 청중을 마주하고 있을 때 주최자의 우측이다. 따라서 관람자나 청중의 입장에서 명예로운 자리는 왼쪽이다.

(c) 유엔이 주최하는 유엔관리와 국가 또는 기타 국제기구의 대표간 공식 양자회담에서 명예로운 자리는 초청국의 국기에 주어진다(위치는 아래 도식에 그려있다); 그리고



(d) 국가나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유엔관리와 국가나 기타 국제기구의 대표간 공식 양자회의에서 유엔기는 명예로운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위치는 아래 도식에 그려있다).



3. 다자회의를 포함한 다른 국기와 함께하는 유엔기의 게양

(a) 유엔깃발은 다른 모든 국기들이 같은 높이에 게양되고 같거나 작은 크기로 제공되는 다음형식하에 다른 국기들과 함께 게양될 수 있다:

- (i) 깃발원형게양에서: 유엔깃발은 원형게양깃발의 일부가 되어선 안되고 그러한 원형의 중심이나 원형에 인접한 적절한 지점에 있는 깃대에 게양될 수 있다. 깃발원형게양에서 국가의 영어 알파벳 순서를 사용하여 시계방향으로 표시되도록 게양해야 한다;
- (ii) 선형게양깃발, 군집게양깃발, 반원형게양깃발에서: 유엔기 이외의 모든 깃발은 게양된 국가를 포함한 표시를 국가의 영어 알파벳순서를 사용하여 관람자나 청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게양해야하며, 유엔기는 적절한 지점에 별도로, 바람직하게는 관람자나 청중의 유리한 지점에서 선형게양의 왼쪽, 또는 선형, 군집형 또는 반원형의 중앙이나, 두 개의 깃발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형, 군집형 또는 반원형의

양쪽 끝에 게양한다; 그리고

(b) 유엔기가 게양된 국가가 그 나라 국기의 특별게양을 원할 때, 그러한 특별게양은 깃발 배열이 선형, 군집형, 반원형의 형태를 취할 때만 할 수 있으며 게양되고 있는 그 나라 국기의 경우 선 전체길이의 1/5 이상 간격으로 깃발그룹에서 분리되어 선형게양깃발의 각 끝에 게양할 수 있다.

4. 차량에의 깃발게양

(a) 깃발을 차량에 게양할 때 깃발은 차량 위에 눈에 잘 띄게, 깃대에서 자유롭게 펄럭이도록 한다. 깃발은 샴시에 부착하거나 오른쪽 펜더나 후방 쿼터에 고정해야 한다;

(b) 유엔깃발 이외의 깃발은 유엔차량에 게양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c) 특히 보안상의 이유로 차량에 깃발을 게양하는 경우,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가시성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하며 1조 4항의 차량깃발에 대해 설정된 일반치수보다 커야 한다.

5. 선박에의 깃발게양

(a) 유엔기는 유엔공식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배인 경우에만, 그리고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면허를 가진 배에 기국의 국기와 함께 유엔기가 게양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선박에 게양될 수 있을 것이다;

(b) 유엔기는 선박의 국적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선박에 게양되어서는 안되며 기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등록표식을 게양하여 식별해야 한다;

(c) 최대한도에서 유엔기, 기국의 기 및 선박이 향해 중인 영해국가의 예의기만 게양될 수 있다. 군대-또는 경찰-를 파견하는 국가의 국기 또는 유엔공식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에 탑승한 국민의 국기와 같은 다른 깃발들은 게양되어선 안된다.

(d) 유엔깃발은 기국의 깃발과 같은 크기여야 하며, 주 마스트의 상단 또는 전면 마스트의 상단에 게양해야 한다. 기국의 국기는 선박의 선미에 또는 선박이 선적표시를 게양하지 않은 경우 주마스트의 마룻줄 옆에 게양해야 한다. 선박이 주 마스트상단에 “예의기”로 진입하는 영해국가의 국기게양이 요구되는 경우 유엔기는 전면마스트상단에 게양되어야 한다. 예의기는 유엔기보다 작아야 한다.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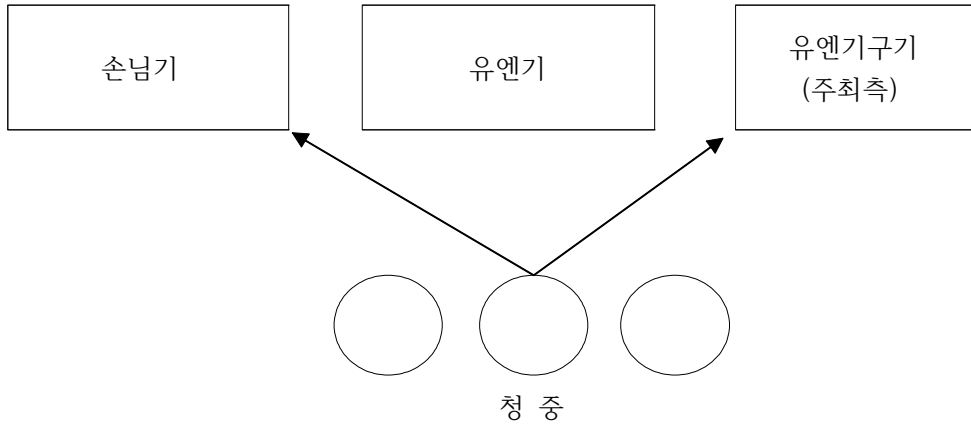
별도로 관리하는 유엔의 기금, 기관 및 프로그램과 유엔체계의 조직에 의한 깃발사용

1. 유엔기는 별도로 관리되는 유엔의 기금, 기관과 프로그램들에서 그들의 사무소나 그들이 현 깃발법에 따라 깃발을 게양하도록 제공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기타 부지에 게양할 수 있다.

2. 유엔체계 조직에 의한 사용

(a) 깃발은 유엔체계의 조직에서 그들의 사무소나 그들이 현 깃발법에 따라 깃발을 게양하도록 제공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기타 부지에 게양할 수 있다; 그리고

(b) 깃발은 유엔체계조직의 관리와 한 국가대표나 기타 국제기구 사이 및 유엔체계 조직이 주최한 양자회의에 게양되며 명예의 자리는 손님의 국기에 주어진다. 유엔깃발은 그런 깃발이 게양된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위치는 아래 도식에 그려있다).



제6조

깃발의 일반적인 사용

1. 유엔기는 현 깃발법에 따라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깃발은 유엔과 더 나아가 유엔의 원칙과 목적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기 위해 그런 깃발계양을 조건으로 한 조직이나 개인들이 현 깃발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a) 깃발을 계양하는 것이 유엔과 그 기를 계양하는 단체나 개인이 어떤 협력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는 안된다;
 - (b) 상업적 이익이나 신용을 창출할 목적은 안된다; 그리고
 - (c) 기간은 제한되며 일시성이 기본이다.
3. 위의 2항에 명시된 기준에도 불구하고:
 - (a) 현 고시의 발행이전에 깃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승인된 조직** 및 개인들은 위의 2(c)항에 따라 명시된 제한사항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 (b) 특별한 상황에서 유엔은 어떤 조직과 개인들이 영구적으로 깃발을 계양하는 것을 인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무분별한 깃발계양은 현 깃발법의 정신에 어긋나며 강력히 저지한다.

제7조

조기

1. 유엔기는 애도기간을 표시하기 위해 깃대절반까지 내릴 수 있다.
2. 깃발은 사무총장의 승인에 따라 다음 상황에서 조기를 계양한다.
 - (a)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원수의 사망 시 깃발은 유엔본부와 본부에서 떨어진 사무소에, 그리고 회원국에 위치한 유엔사무소에 죽음을 알게 된 즉시 하루 동안 조기를 계양한다;
 - (b) 위(a)항에 명시된 것들 이외의 유엔사무소들은 그들의 사무실이 위치한 나라의 공식에도 절차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 조기를 계양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은 현지 관행, 외교부 의견과나 현지신임외교단의 최고참자와의 협의를 고려해야한다.

(c) 전 유엔사무총장이 사망한 경우, 유엔본부 및 기타 모든 유엔사무소에서 조기를 게양한다.

(d) 전 유엔총회 의장의 사망시 유엔본부와 유엔본부에서 떨어진 유엔사무소, 전 총회의장이 활동하던 회원국에 위치한 유엔사무소에서 사망소식을 접한 즉시 하루동안 조기를 게양한다; 그리고

(e) 깃발은 위(a)에서 (d)항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특별한 상황에서 사무총장의 승인에 따라 조기로 게양된다.

3. 위의 2항에 나열된 상황에서 사망소식을 접한 조직이 그날 이미 깃발을 게양한 경우라면 내려달지 않고, 대신 다음 날 조기로 게양한다. 사무총장은 애도기간을 결정한다.

4. 위의 2항에 설명된 절차가 기상조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실행불가능한 경우 깃발은 장례식이나 특별한 기념일에 조기로 게양해야한다. 예외적 상황하에서 사망당일과 장례식날 양일에 조기를 게양할 수도 있다.

5. 조기게양시 우선 순간적으로 정점까지 게양했다가 깃발절반 위치로 내린다. 깃발은 그날의 하강식전 다시 정점까지 올려야 한다.

6. 깃대중간에 조기를 게양할 때 다른 깃발을 게양해서는 안된다.

7. 장례행렬에서 깃발이 게양된 깃대에 검은장례리본장식을 사무총장 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명령에 의해서만 부착할 수 있다.

8. 깃발을 사용하여 관을 덮을 때 무덤에 내려거나 땅에 닿도록 해서는 안된다. 깃발은 깔끔하게 접어서 가까운 친척이나 고인을 기리는 적절한 유가족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제8조

금지

1.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기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달리 사무총장의 승인이 명시되지 않는 한 상품목록과 직접 연관시켜선 안된다.

2. 깃발 또는 그 복제물은 유엔에 의해 또는 유엔을 대신하여 출판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문구류, 책, 잡지, 정기 간행물 또는 기타 성격의 출판물에 도장찍기나, 인쇄하거나, 새겨지거나 달리 부착될 수 없다.

3. 깃발은 깃발자체의 게양에 꼭 필요한 게 아닌 어떤 종류의 상품에 어떤 형식으로도 부착되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성질의 표장, 휘장, 문자, 단어, 도형, 디자인, 사진 또는 그림에 결코 깃발을 배치하거나 부착할 수 없다.

5. 제7조 8항을 침해하지 않고 깃발은 꽃줄을 달거나 뒤나 위로 당겨 접거나, 모든 종류의 커튼으로 사용하거나 해선 안되고 유엔상징이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항상 늘어뜨려져 있어야 한다.

6. 7조 8항을 침해하지 않고 깃발은 어떤 종류의 주름잡힌 포장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권한과 책임

1. 현 고시의 관리에 대한 사무총장의 권한은 다음에 위임된다;

(a) 비서실장, 유엔기의 사용과 유엔본부에서의 조기계약 승인권; 그리고

(b) 위(a)항에 따라 본부에서 멀리 떨어진 사무소의 장, 다른 유엔사무소의 장, 특별 대표, 공관장 및 상주조정관은 조정된 방식으로 제7조에 따라 그들의 사무실과 공관에서의 조기계약 승인권.

2. 총회 및 회의 관리부서의 의견 및 연락업무는 깃발사용과 현 깃발법시행에 관해 정부와 유엔사무소 및 공관에 지침과 훈령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3. 유엔비서실장, 특별대표, 공관장 및 상주 조정관을 포함한 유엔관리들은 현 깃발법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